

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을 위하여



이 팸플릿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

- 경찰에 의한 피해자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
 - 경찰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인지
 - 교통사고 가해자는 어떤 절차로 처벌되는지
 - 교통사고에 관한 상담은 어디로 하면 되는지
 - 자동차 보험제도란 어떤 것인지
- 등을 알리기 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.

모르는 점이나 걱정거리 등 주저없이 상담해 주십시오
【담당수사원】

경찰서
(대) 전화 - - (내선)

경찰의 피해자지원

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연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- 지정 피해자지원 요원제도
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수사원과는 따로 지정된 경찰직원이 피해자 등과의 동행 각종상담 수리 등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피해자 연락제도
피해자와 유가족은 교통사고 수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해자는 잡혔는지 가해자의 형사 처분은 어떻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
경찰에서는 이러한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수사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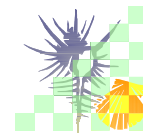
※ 피해자와 유가족 중에는 사고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연락도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.
그러한 분은 담당 수사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.

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부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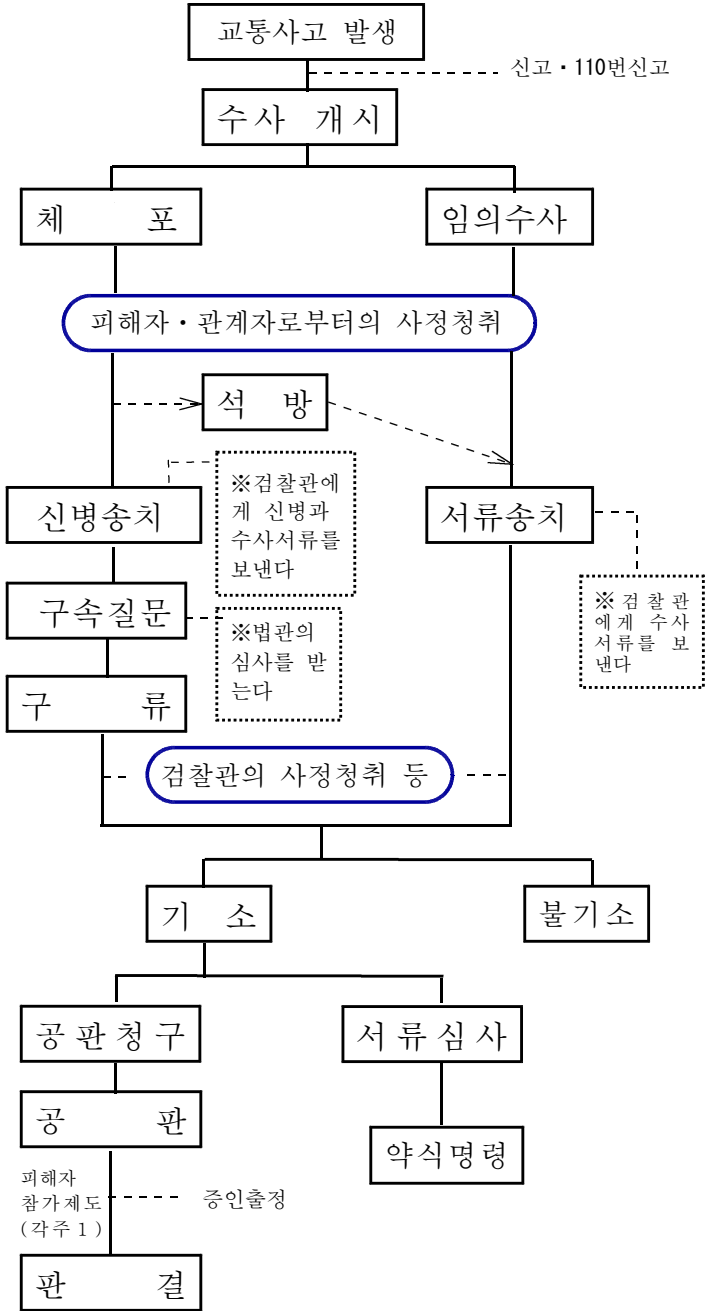
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형사수속상 필요한 여러가지 부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.

- 사정청취
피해자와 유가족은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상 필요하기 때문에 물어볼 것입니다.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

경찰관 뿐만 아니라 검찰관도 사정청취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.
향후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서 증언을 부탁할 경우도 있습니다.
- 증거품 제출
교통사고 당시
○ 피해자가 타고 있었던 차량
○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
등이 사고상황 증명 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증거품으로서 제출을 부탁할 경우도 있습니다.
- 실황견분(검증) 입회
교통사고 상황 등을 밝히기 위해서 실시하는 실황견분(검증)에 입회를 부탁할 경우가 있습니다.



형사수속의 흐름



각주 1 피해자참가 제도: 피해자나유가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 참가인이라는 입장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제도
 ※ 범인이 소년(20세미만)인 경우는 소년심판 수속 등에 의한 경우가 있고 이들 수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

교통사고 상담창구

【경찰의 상담창구】

연락처 명칭	전화번호
이바라키현 경찰종합창구상담 센터	# 9110 또는 029-301-9110
이바라키현 경찰본부 교통부 교통지도 과 기획지도계	029-301-0110 내선 5112

【이바라키현 교통사고 상담창구】

연락처 명칭	전화번호
이바라키현 교통사고상담소(주우오우)	029-233-5621
이바라키현 교통사고상담소(로코우)	0291-33-6222
이바라키현 교통사고상담소(젠난)	029-823-1123
이바라키현 교통사고상담소(젠세이)	0296-24-9112

【교통관계기관 상담창구】

연락처 명칭	전화번호
재단법인 이바라키현 교통안전협회 교통사고상담실	029-247-3566

【변호사·손해보험협회 등에 의한 교통사고 상담창구】

연락처 명칭	전화번호
재단법인 일본변호사연합회 교통사고 상담센터	029-227-1133
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 간토우 지부 미토 자동차보험청구 상담센터	029-226-1693
손해보험료율산출기구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 손해조사센터 청구상담 프리전화	0120-9-1128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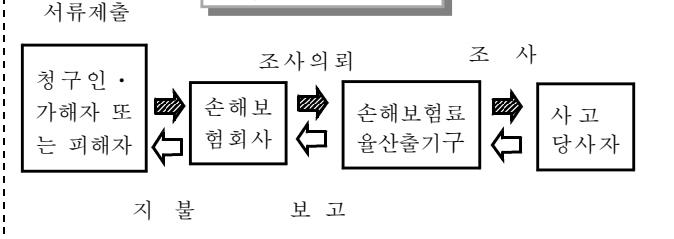
※ 상기 교통사고 상담창구에서는 일본어밖에 대응할 수 없으니까 통역 등을 통하여 상담해 주십시오.

보험청구 수속

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(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 포함)
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차 1대마다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입니다.
- 피해자청구
 피해자나 유가족으로부터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가해자청구
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운전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 배상금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손해배상 범정 한도액
 - 사망 3,000 만엔
 - 상해 120 만엔
 - 후유장애 75 만엔~ 4,000 만엔

보험청구의 흐름



- 임의 보험
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충할 수 없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 계약 범위내에서 손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
 뺑소니(상대방이 밝혀지지 않는다)나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피해자 등을 구제하기 위해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
 청구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등의 자세한 것은 손해 보험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.